

의안번호	제 255 호
의 결 연 월 일	2019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 
조례안

발 의 자	서 동 학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9년 8월 13일

#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( 서동학 의원 대표발의 )

의안 번호	25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19년 8월 13일

발 의 자: 서동학, 이숙애, 김영주,  
박성원, 이의영, 황규철,  
김기창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충청북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나.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마. 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바.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

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 예산팀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-43호

2019. 5. 21. ~ 2019. 5. 28.

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) ①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
2. 기금운용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매년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,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
2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,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

**제4조(기금의 용도)**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. 다만,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1.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중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3조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
2.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
3. 임대형민자사업(BTL) 지급금에 충당할 경우
4. 노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및 개축, 교육행정기관 신설·이전·증축·개축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
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

**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** ① 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정성·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기금의 운용심의)**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
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
3.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  4.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
  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「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」에 따른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.

**제7조(회계공무원)**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: 기획국장
2. 분임기금운용관: 예산과장
3. 기금출납원: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업무 담당 사무관

② 기금운용관(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)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관계규정의 준용)**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

# 관 계 법 령

## □ 지방재정법

[시행 2019. 4 17]. [법률 제15803호, 2018. 10. 16., 일부개정].

제14조(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,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재정안정화기금“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10.24.]



##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재정수반요인

없음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

#### 3. 미첨부 사유

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에 따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기금을 조성하고 사용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별도의 비용은 수반되지 않음.